

“20대 대선, 기윤실 공명선거센터 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11시 ~ 12시
-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 ◆ 순서

시간		순서	담당자
11:00~11:10	10분	개회 /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영상 시청	이상민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11:10~11:15	5분	인사말 /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	최주리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1:15~11:25	10분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소개 및 취지 설명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11:25~11:35	10분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	천윤석 변호사 (변호사 천윤석 법률사무소)
11:35~11:45	10분	공명선거센터 운영 발표 - Talk, Pray, Vote 캠페인 -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 공명선거 모니터링 활동	김현아 국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1:45~11:50	5분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하민)
11:50~12:00	10분	질의응답	김병규, 이상민, 추선희, 천윤석

2.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

1) 단체의 사명에 기반을 둔 공명선거운동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단체의 사명 중 하나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으로 천명하였음

(2) 기윤실은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민사회의 공명선거운동을 주도하였음

- 공명선거운동 : 1991년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기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를 연달아 창립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주도함. 부정선거 방지 및 신고, 유권자 모임 조직, 후보 정책토론회, 정책평가 지표개발, 공명선거용 성경공부문제지 제작, 공명선거채점표 제작 등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 1996년 청원부터 2001년 통과까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전개
- 의정감시운동 : 1998년 의회발전시민봉사단, 1999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국감연대) 발족

(3) 2000년대 초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유권자운동, 공명선거운동에 집중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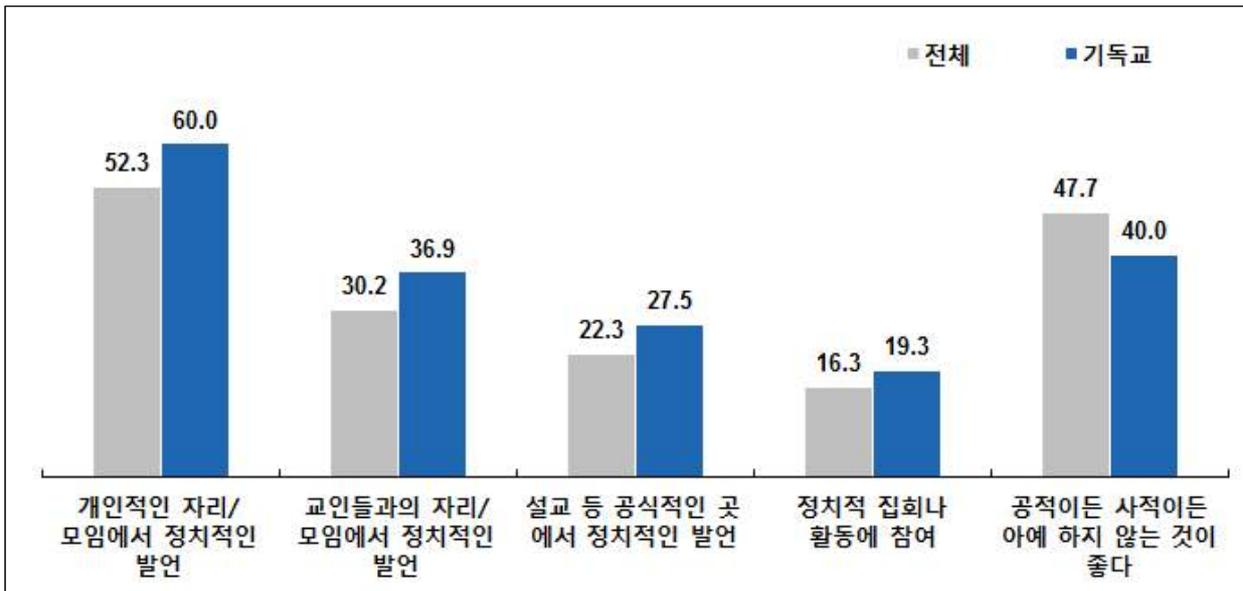
- 기독교유권자운동 : 투표참여운동, 대학가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 Talk Pray Vote 캠페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 단행본 출간, 묻지마 투표 안하기, 후보자의 교회 방문 설문조사 발표
- 기독교정치인 육성 : 공의정치포럼 창립. 이후 공의정치실천연대, 희망정치시민연합으로 이어짐
- 2000년 초반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입장을 발표 (선거법 완화 개악 시도 비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진상 촉구 등)

(4) 공명선거운동의 필요성

- 기윤실은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절 반 가량(47.7%)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52.3%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참여나 활동해도 된다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p.3 표1 참고)
- 기윤실은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19.4%), ‘국가의 기본 방향제시’(18.1%) 등의 순을 보임 (p.3 표2 참고)
- 기윤실은 개신교가 20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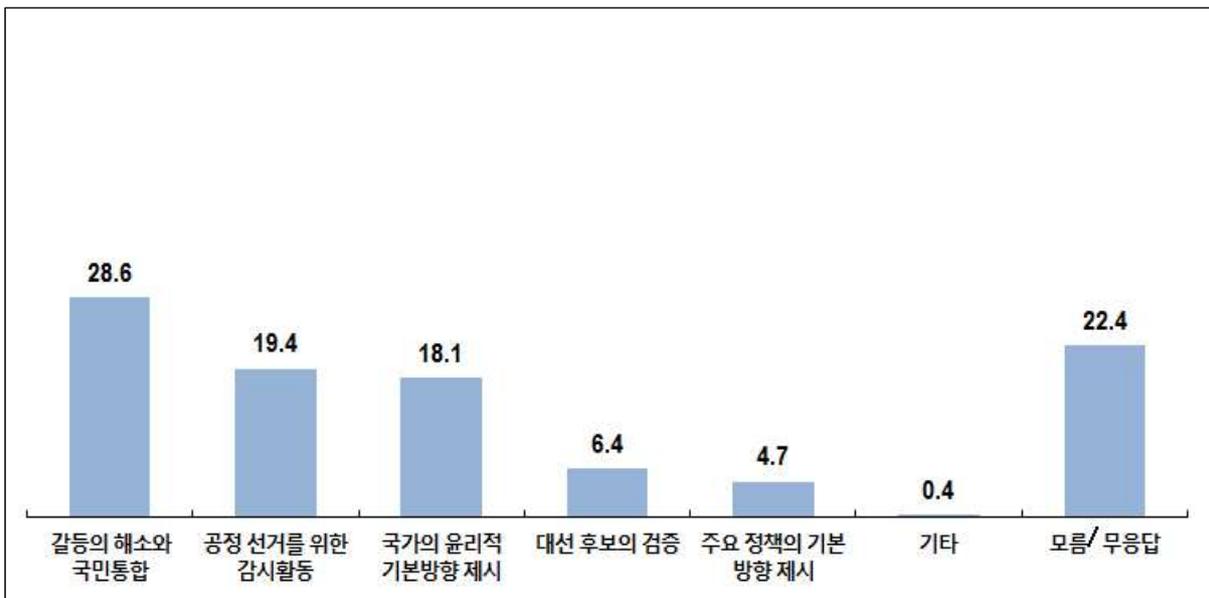
[표1]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전체 vs 개신교인, 중복응답)

(N=1000, %)



[표2] 19대 대선 과정에서의 기독교 역할

(N=1000, %)



(5) 연보

1991	- 1월 12일,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 발족 주도
	- 2월 7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험) 결성 - 공선거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명선거실천불교추진위원회, 한국노총 등 7개 단체
1992	- 14대 총선, 대선 : 참여단체가 수백 개로 증가 : 부정선거 감시교발센터 운영, 유권자 캠페인, 군부대 부재자투표 문제 개선, 통합선거법 개정, 선거비용 투명화, 선거의 정책 대결화, 언론 보도 감시, 후보자들의 TV 토론 문화 정착 등 전국 단위 운동으로 확산
1996	- 15대 총선 :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 후보자별정책비교표제작배포 -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 제출
1997	- 15대 대선 : 공명선거-올바른 지도자 선출 기도회 캠페인, 후보자채점표, 모범설교집 배포
1998	- 6·4 지방선거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 의회발전시민봉사단 발족
1999	-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국감연대) 발족 - 공의정치포럼(공정포럼) 창립
2002	- 16대 대선 : 공명선거 공익광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제안활동
2004	- 17대 총선 : 기독교유권자활동매뉴얼 개발보급, 부재자투표 신청운동
2006	- 4회 지방선거 기독교유권자 운동 공명선거주일
2007	- 17대 대선 : 기독교100인 유권자 실천단 운영, 대선후보평가지표 개발, 후보정책평가 토론회, 정책평가자료집 제작보급, 정책투표 캠페인
2008	- 18대 총선 : 정치적 제자도 설교집 제작보급
2010	- 5회 지방선거 : 기독교유권자운동 Talk Pray Vote 캠페인
2011	- 10-26 보궐선거 기독교유권자운동
2012	- 19대 총선 : Talk Pray Vote 캠페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2012) 도서제작
	- 18대 대선 : 후보자정책집담회,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2014	- 6회지방선거 Talk Pray Vote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사전투표제 참여 활동
2016	- 20대 총선 : Talk Pray Vote 캠페인, 후보자교회방문인식조사
2017	- 19대 대선 : Talk Pray Vote 캠페인, 신고센터 운영, 기독교 팩트체크
2018	- 7회지방선거 : Talk Pray Vote 캠페인,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배포, 지방선거공동포럼
2020	- 21대 총선 : Talk Pray Vote 캠페인,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배포, 공정한 선거제도 만들기포럼, 공명선거 감시단
2021-2022	- 20대 대선 : Talk Pray Vote 캠페인,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배포, 100대 공약제안 기독교시민단체연대 결성, 공명선거 감시단, 대선특별 포럼

3. 종교단체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종국 공동대표 정병오, 정현구, 조성돈, 조주희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 02-794-6200 | cemk.org | cemk@hanmail.net

● 교회에서 본 공직선거법 내용

1.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Yes 교인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

No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Yes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

No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 없이 갑자기 해당 교인이 기도·간증·무료 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 하는 것은 **금지**

2.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Yes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

No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No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 **금지**

3. 예배나 모임을 할 때

Yes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No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No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No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 **금지**

Yes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가능**

No 선거기간 중이나 선거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4.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Yes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약'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능**

No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No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글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행위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Yes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가능**

No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지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금지**

● 후보자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 내용

1. 선거운동의 경우

Yes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

No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2. 헌금을 할 때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Yes (출석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

No (출석교회에서)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No (방문교회에서)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 **금지**

3. 선거운동 가능 장소

Yes 후보자는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안, 밖에서 선거운동 가능(다만, 관리자의 허락을 전제로 함)

No (예비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는 선거운동 금지

● 참고 공직선거법 규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것은 특정한 건물 내부만이 아니라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외부와 담장으로 구획 지어져 있는 전체로서의 종교시설 안을 의미한다. [대구지방법원 2010.7.16. 판결2010고합232]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9.]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작·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4. 종교단체의 법 위반 판례

- 2004. 3. 28. 주일예배 공지 시간에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명이 된다. 우리교회 집사인 ○○○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는 등 ○○○의 지지를 유도하였음. (2004. 4. 9. 경고)
- 2004. 4. 6. 교회 및 야외 주차장에서 교회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대표의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실시했으며, "60대와 70대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앰프를 통하여 규탄문을 낭독하고, 동 성명서와 규탄문을 25매정도 배부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6매를 집회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2004. 4. 12. 고발)
- 교회 담임목사 겸 노인대학 학장이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후보자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4. 8. 18. 판결 2004고합225)
- ○○○교회 목사 ○○은 같은 교회의 집사인 국회의원 ○○○의 "무료법률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2004. 11. 1. 교회정문에 게시하였고 교인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2004. 11. 9. 경고)
- ○○○은 2008. 4. 6. 아침1부 예배시간에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교당이라고 하면서 당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2008. 4. 7. 고발)
-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2회, 공명선거 관련 공문 2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판결 2008노645)
-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설교를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8. 14. 판결 2008고합27)
-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65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단인 A당에 투표하지 말고 B당에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여 종교적인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교회 아나운서로 하여금 설교내용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하여 선거기간 중 교회 건물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교회 후보 700여 매를 신도들에게 배부하였고, 또한 교회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신문 700여 매를 신도들에게 배부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0. 30. 판결 2008고합130)
- 2011. 3. 19. ○○○교회 목사 甲은 관내 목사 31명과 교인 122명을 ◇◇당 예비후보자 乙선거사

무소에서 개최한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종료 후 참석한 장로 등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하였고, "개소식 예배"를 알리기 위하여 주말 예배 시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관내 31명의 목사들에게 직접 참석 독려전화를 하고 122명의 신도들에게 참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음. (2011. 3. 30. 고발)

- ○○○ 목사는 2011. 10. 23. 예배에서 "수요일 저녁 ○○시장선거가 있다 3일 동안은 ○○시장 선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 심장부와 같은 ○○지역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과 "○○신문이 나왔다 3~4장씩 가져가서 가족들과 돌려봐라"라는 내용으로 설교함. (2011. 10. 25. 수사의뢰)
- 대전 A목사는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2016년 4월 10일 예배시간에 그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함. 대전 선관위는 선거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서면 경고 했으나, 대전지검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며 불구속 기소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음 (2017. 3. 20. 대전고법 형사 8부)
- 서울 A목사는 21대 총선에서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라고 발언함. 2심 재판부는 투표장에서의 가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인점,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 내지 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 등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계획적·의도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음 (2021. 10. 22. 대법원)

5.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센터 운영계획 발표

(1) 공명선거 모니터링단

- 기윤실 공명선거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선거기간 내 불법선거운동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선거법 위반 사례에 관한 구체적 증거(사진, 영상, 녹음 등)를 접수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지지/비난이 담긴 글 작성 및 유포 하는 등,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

(2)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리한 포스터 및 Q&A영상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숙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배포
- 교회는 포스터를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다운받아 인쇄하여 교회에 부착하도록 안내

(3) Talk Pray Vote 캠페인

- 시민이자 성도, 성도이자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방향과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플릿을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안내

※ 위반사례 발견 시 전화(070-7019-3757) 또는 이메일(cemk@hanmail.net)로 문의/제보 바람

교회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YES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 ②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간증하는 것 	교인이 출마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 ✖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 없이 갑자기 해당 교인이 기도, 간증, 무료 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을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권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 ✖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⑤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예배나 모임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것 ✖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 등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⑦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하는 행위 ✖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선거법 위반 [문의/신고](#)(녹음 및 촬영 환영) [전화](tel:02-794-6200) 02-794-6200 [이메일](mailto:cemk@hanmail.net) cemk@hanmail.net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독유권자운동 캠페인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고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합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함께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갈 기회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독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고, 투표에 잘 참여합니다.

기독유권자운동



Information 꼭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 고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
- 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정해진 순서 외에 갑자기 기도, 간증을 하도록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 (예배나 모임 중)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 (예배나 모임 중)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비유나 간접회법으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 행위 금지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역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능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 (촬영, 녹음 등 증거 확보 필수)
 선관위, 국번없이 1390 기음실, 02-794-6200, cemk@hanmail.net

Election 제20대 대통령선거 개요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생 까지)	
선출대상	대한민국 대통령	
일정	2월 13일(일) - 2월 14일(일)	후보자 등록
	2월 27일(일)	투표소 공고, 선거공보 및 안내문 발송
	3월 4일(금) - 3월 5일(토) 오전6시 - 오후6시	사전 투표
	2022년 3월 9일(수)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 - 투표 및 개표

* 투표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전국 투표소의 위치는 미리 꼭 확인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v.kr)

기독유권자운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55길 30, 새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gyunsil



대통령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모임을 진행해 보세요.
- <대화규약> 우리는 모두 타당합니다.
-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듣고, 배려하며 말합니다.
-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01 시작하기 나에게 '정치'와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러 결정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 우리는 모두 '정치'의 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러분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선거와 투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투표라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만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02 생각해보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과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무엇일까?

한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선택해 볼까요?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은 무엇입니까? (하단 각주 참고)

- 1) 법과 사회질서 확립을 우선하는 세력
- 2)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자유를 우선하는 세력
- 3) 경제적 재분배를 우선하는 세력
- 4) 사회적 수소가 가벼운 차별 금지와 다양성을 우선하는 세력

03 알아보기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했을까요?
 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생각해보는 대통령의 자질, 사회적 과제와는 얼마나 일치하나요? 후보자들의 홍보도를 펼쳐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검색해봅시다.

04 실천하기 이 땅 위에 인애와 공평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자, 이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단정만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합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나누어 봅시다.
 인애와 공평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야기합니다.

1) Old Right 2) New Right 3) Old Left 4) New Left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문

- 아래 기도문은 예시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각자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정치 제도를 통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펼치소서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세상의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정부패무한 정치인들에 대해 그저 냉소하거나, 극단적으로 정치를 이용했던 태도를 돌이킵시다. 국민의 한 사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직하고 책임있게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뜻이 이 땅에 관망하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후보로 나선 이들과 선거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공정한선거를 위해 힘쓰도록, 교회가 특정 정파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하소서.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어두움을 해소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이 아닌 통합을 이루며 공동선과 신뢰를 회복시킬 이가 세우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거나 소외받는 이웃이 없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가, 바른게, 투표합니다!

- 각자만의 실천사항을 만들고, 투표일에 SNS에 공유해주세요!
 #기독유권자 #공명선거운동

시민이자 성도, 성도이자 시민인 기독유권자의 정치하고 책임있는 실천사항

- 01 반드시 투표하고, 주변에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와 개표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감시한다.
- 02 연고와 종교안으로 지지하지 말고, 교회는 선거 운동에 과도하게 나서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3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이음실,IVP)"

이러한 노력으로 정직한 투표 자유와 공평성은 유권자들에게 큰 책임을 요구한다. 정치인의 잘못은 그를 뽑은 유권자들이 지게 된다.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훌륭한 이념이나 정책, 무엇보다도 덕성이 갖추어진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순복음 기음실 자원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주천사 중에서
 정치는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행위이다. 국가의 행방이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고, 또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성호 교수(순신대 철학, 전 기음실 사회정치윤리문명부장), 서울 중에서
 폭력과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정책 실현이 가능한 의회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나라를 세우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100% 선거에 참여하여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는 축제의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본문 중에서

6. 기자회견문

교회는 선거 중립을, 선거과정에서 정직을 지켜주세요.

기윤실 공명선거센터 운영 발표 기자회견문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권력은 선거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므로 어느 선거보다 국민의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에 사무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종교적 이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도 종교 세력을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불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2항은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명시함을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교회사를 보더라도 개신교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의와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과정과 정치적 의사표현, 공론 형성이 투명하고도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자 의무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주요 선거철마다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기윤실은 오는 20대 대선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하여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지지/비난이 담긴 글 작성 및 유포 하는 등,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와 Q&A영상을 제작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숙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배포하겠습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Talk, Pray, Vote(TPV)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이자 성도, 성도이자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방향과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신교가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시오!

2021년 11월 15일(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끝)